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5-29호

임실군의회 김정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4일

임실군의회의장 임실군의회 의장인

1. 제정이유

임실군 군민의 연령과 상황에 맞는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 촉진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자리정책 추진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다.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 안 제6조)
라.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마.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바.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5년 6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3) 전자우편:charity81@korea.kr

4. 제정안: 붙임

임실군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 일자리 창출과 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통해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일자리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대학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맞춤형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군수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및 창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4. 창업 인큐베이팅 및 마케팅 지원사업

5. 취업 및 창업 관련기관 간의 연계구축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취업 및 창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일자리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임실군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임실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실군 노사민정협의회 및 관련 실무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 확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는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수당 지급 등) 군수는 일자리 창출 사업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 행정기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 「임실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김정흠 의원

관련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 · 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 · 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 · 전망에 관한 조사 · 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 ·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 · 직업 · 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 직업지도 · 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 · 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 · 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고용촉진 · 고용안정 등을 실현하며,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